

의안 번호	2088	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4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4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5. 19.(금)

2. 제안이유

○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발생으로 예치금이 증가하였고, 2023년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,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발생으로 인해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중구의회에 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금조성 현황

【당초】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 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		
170,983	71,158	0	71,158	242,141	

【변경】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 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		
2,071,764	6,265,095	0	6,265,095	8,336,859	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제11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(62억원) 수입 발생으로 2023년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,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(안)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-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 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연도별 기금구성 및 집행현황
 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